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736
----------	-----

2024. 10. 18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조성태 의원 등 7인
- 나. 발의일자 : 2024년 10월 2일
- 다. 회부일자 : 2024년 10월 2일
- 라. 상정일자 : 2024년 10월 11일
  -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조성태 의원)

### 가. 제안사유

-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일부개정 및 「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정에 따라 인용하는 정의 조항의 내용으로 변경하고,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과 협력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관련 조례에 맞게 정비(안 제2조)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 정비(안 제4조)

-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운영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협력 조항 정비(안 제7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31일 일부개정, 2024년 5월 1일 시행된 「독서문화진흥법」 및 「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맞춰 인용하는 정의 조항을 변경하고, 독서 문화 진흥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주요 내용은 "지역서점"에 대한 정의를 「충청북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규정된 용어 정의에 맞춰 정비하고(안 제2조), 「독서문화진흥법」 개정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(안 제4조),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수행 시 참가자에게 상품권,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(안 제6조),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 조항을 신설(안 제7조)하고자 하는 것임.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”을 “방문매장을 두고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**제4조(도지사의 책무)**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 상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<u>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“지역서점”이란 충청북도에 주소와 <u>방문매장을 두고 「중소기업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.</u></p>
<p><u>제4조(독서 교육 기회 제공 등)</u></p> <p>① <u>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도지사는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제4조(도지사의 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충청북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도지사는 독서 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6조(독서 문화 진흥 사업) ①~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6조(독서 문화 진흥 사업) ①~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가자에게</u></p>

제7조(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)

<신 설>

①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상품권, 기념품,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7조(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)

①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도내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독서 문화 진흥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